

# 건설 소식

CONSTRUCTION NEWS

## 교과부, 출연(연) 노후시설물 환경개선사업 본격 추진

내년부터 보수 필요한 58개 건물  
리모델링着手

교육과학기술부와 기초기술연구회는 출연(연) 노후시설물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5개 출연(연)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노후시설물 환경개선 사업은 총 590개 건물 가운데 15년 이상된 75개 건물을 선별해 안전진단 등 정밀조사를 실시, 등급에 따라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밀조사는 내구성 및 내진성능 등 실사한 다음 경미한 수준(A~B등급)과 보수필요(C등급), 전면 수선·철거(D~E등급) 등 5단계로 구분한다. 교과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13개 출연(연) 건물 389개, 교과부 직할 12개 기관 건물 201개에 대해 내구성 및 내진성능 등의 현장실사를 진행했고, 카이스트(KIST) 등 6개 기관 15개 연

구동이 보수가 필요한 C등급을 받아 내년부터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경미한 수준인 B등급을 받은 58개 건물은 2015년 이후에 별도 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2단계(2021년)과 3단계(2031년)로 사업을 나눠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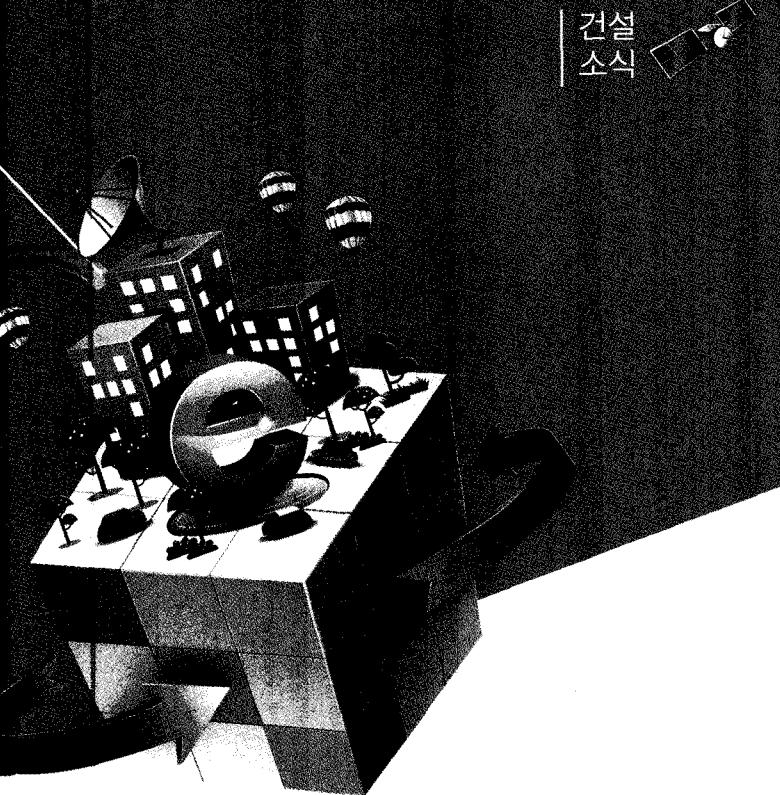
교과부는 C등급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405억 95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를 위해 내년 정부예산안에 생명(연)의 자생식 물동 등 3개동의 환경개선사업비 34억3600만원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정부 재원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별로 자체재원 투입을 유도한다는 복안도 마련했다.

교과부는 출연(연)의 노후시설물 개선으로 안전성 향상과 에너지 소비 및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은 물론 친환경 건축물 확대로 연구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교과부와 기초기술연구회는 다음달 개최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환경개선 종합계획을 보고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회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 하폐수 재처리 사업 민간에도 허용

물재이용촉진법 시행  
산업환경설비업체 참여 가능  
공공청사 빗물이용시설 의무화

공공청사의 빗물 이용 시설을 의무화하고,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관련 전문건설업종 신설 등 내용을 담은 물 재이용 촉진 법안이 시행된다.

법률 시행에 따라 공공청사는 의무적으로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붕면적 1000m<sup>2</sup>로 운동장, 체육관, 공업무시설, 공공기관을 신축 및 증개축, 재건축 할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빗물이용시설 설치는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처음 내린 빗물을 베재할 수 있는 처리시설과 빗물을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설치공사를 한 후에는 30일 이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택지 및 관광단지, 도시, 산업단지 개발사업도 예외 아니다. 이들 사업장은 공사 진행기간 동안 중 수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중수도 설치대상 시설물 및 개발사업은 하루에 사용하는 용수량(수돗물, 지하수)의 10% 이상을 화장실용수, 도로살수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물 재이용 사업자 범위도 확대됐다.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재이용사업을 원할 때는 재이용시설의 평면도,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재이용수 공급 증명서, 사업의 효과 등의 내용이 담긴 서류를 제출하고 환경부 장관 승인을 받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폐수 재처리수에 대한 사용용도는 도시재이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습지용수, 공업용수, 지하수충전용수 등 8개로 구분된다.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종 등록 조건은?

물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서 건설업계의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부분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 및 시공업 신설 대목이다.

환경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관련 자격증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재이용 설치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다만 기존 종합건설업체 중 산업환경설비업 자격을 갖춘 건설사와 일부 전문건설업체 중 환경부가 정한 기본 요건을 충족시킨 업종은 별도 자격증 취득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해 건설업계에 큰 피장을 없을 전망이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 및 시공업 등록기준은 사무실, 실험실, 기술인력으로 재이용시설의 용량별(1만m<sup>3</sup>이하, 1만~5만m<sup>3</sup>, 5만~10만m<sup>3</sup>, 10만m<sup>3</sup> 이상)로 등록할 수 있는데 신청서에는 기술인력 보유현황(5명까지), 시설보유현황, 장비보유현황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또는 수질환경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1년 이상 해당 분야 실무에 종사한 사람을 뜻한다.

만약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각되면 1차 위반에 영업정지 6개월, 2차 위반에 등록이 취소되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 하도급할 경우에도 똑같이 2차 위반시 등록이 취소된다.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계약을 체결하면 발각 즉시 등록이 취소된다.

그러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사업이 민간에게 개방된다 하더라도 요금 결정권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 민간 사업자는 시설을 운영하더라도 환경부령이 정한 요금만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자체 조례가 정한 요금 기준에 따르면 된다.

환경부는 빗물, 중수도, 하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사업은 수익형민자사업(BTO)로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 45만 가구 노후급수관 교체**

소규모 주택 9만 가구는 2014년까지 완료  
소형 옥상물탱크도 2013년까지  
직결급수 전환

서울시는 민간 주택에 공급되는 아리수의 수질 강화를 위해 오래된 건축물의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및 소형 옥상물탱크 철거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연초 발표한 아리수 수질개선 4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다. 서울 시내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소규모 주택 9만 가구, 중·대규모 주택 14만 가구, 재개발·재건축 등 멀실 예정 주택 22만 가구 등 총 45만 가구이다.

이 가운데 시는 녹물이 나오는데도 공사비 부담으로 급수관을 교체하지 못하는 소규모 주택 9만 가구에 대해 총 576억을 투입해 2014년까지 전량 교체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40억원을 들여 1차적으로 3만 가구를 교체한다.

중·대규모 주택 14만가구는 건물주에게 노후 급수관의 실태를 알려 교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멀실이 예상된 22만 가구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특별관리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5층 이하 소형물탱크를 사용하고 있는 건물 2만2000여개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해 2013년까지 전면 철거하고 직결급수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철거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직결급수란 수돗물을 가정에 설치된 물탱크를 거치지 않고 수도꼭지에서 직접 이용하는 급수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옥상물탱크를 철거하면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도시미관 개선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아파트 등 대형저수조 4만2000여곳에 대해서도 수질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시내 모든 초·중·고교에 아리수 음용대를 확대 설치한다

**환경부, 수도용 자재에  
위생안전기준 인증제 도입**

앞으로 모든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환경부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만 사용 가능하다.

환경부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위생안전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방법, 절차 등을 정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공포했다.

기준 적용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수도관, 밸브, 수도꼭지, 유량계, 펌프 등으로, 인증제도의 원활한 도입·정착과 이미 생산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물량을 고려하여 제품 종류별로 인증시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키로 했다.

주철관류는 지난 5월 26일부터 시행됐고, 기타 금속관류 및 합성수지관류는 오는 11월, 밸브류·펌프류·수도꼭지류·유량계류 및 수도미터류는 내년 5월, 도료 및 기타수도용 제품은 2013년 1월이다.

인증심사는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으로 나눠 진행되며 공장심사에 합격한 제품만 제품시험을 받아 환경부가 정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인증받지 않은 수도용 제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관한 정보는 ‘인증정보망(<http://www.kctap.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의 시행으로 수돗물의 품질개선과 음용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표준계약서 사용 건설사, PQ·적격심사 '최대3점' 플러스

조달청, PQ기준 개정안 마련  
혁신도시로 지역사 참여시 가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건설기업은 PQ(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받는다.

또 변별력 강화를 위해 '시공평가결과' 심사항목에서 95점 이상인 평가 등급이 신설되고 혁신도시 건설사업도 4대강살리기 사업과 마찬가지로 PQ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받는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PQ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회계예규에 따라 PQ 신청자가 해당 공사 계약금액의 30% 이상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은 해당 공사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 미만에 대해 사용계획서를 제출할 때 1점의 가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PQ 대상공사는 PQ 신청시 표준계약 사용계획서를 제출받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이지만 PQ 대상이 아닌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자만 받기로 했다.

아울러 낙찰자가 제출한 표준계약서 사용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에 따라 가점의 2배를 감점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연말까지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사업인 혁신도시 건설사업도 4대강살리기 사업과 같이 PQ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더불어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시공평가결과' 심사항목에 90점 이상인 입찰자가 절반에 육박하는 현실을 감안해 95점 이상 등급을 신설해 95점 이상(이하 평점 10점), 90점 이상(9점), 85점 이상(8점), 80점 이상(7점), 80점 미만(6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 중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PQ 심사에 적용되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산비율을 가점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업체 및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에 배점제 및 가점제를 적용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현행 가산비율 적용에 따른 평균 상승 점수에 준하는 △지역사 참여비율 25~30% +2점 △30~35% +4점 △35~40% +6점 △40% 이상 +8점 등과 같이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교량공사에 대한 형태 분류를 삭제해 교량 위치와 경간장에 따라 실적범위를 분류하고 PQ 평가요소에 교통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을 추가하기로 했다. ◎